

제 436 호

1974.3.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346 호 :	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운영관리규칙 ..... 3
◎ 고 시	
제 6 호 :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고시 ..... 5
제 24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 5
제 25 호 :	도시계획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 ..... 6
제 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매시장)결정파지적승인 ..... 8
제 27 호 :	74년도 서울특별시인민회계제1회 새입세출추가경정 예산고시 ..... 8
제 2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일부변경및지적승인 ..... 9
◎ 공 고	
건설부공고제 17 호 :	서울인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9
제 41 호 :	서울특별시 토산물생산업체육성자금 집행요령공고 ..... 10
제 42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물생산지정 업체지정변경공고 ..... 21
제 44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 21
◎ 사 명	..... 2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486

규 칙

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운영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74. 3. 1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6 호

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운영관리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 ( 이하 ' 아파트 ' 라 한다 ) 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입주자선정 ) 판합수원지소장 ( 이하 ' 소장 ' 이라 한다 ) 은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무상적이 우수한 무주택자를 우선하여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한다.

1. 수원지에 근무하는 정규공무원
2. 긴급 복구 요원으로서의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3. 예비군 소대장
4. 운전원
5. 당지 책임자 ( 직, 반장 )
6. 수원지 유지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국공무원으로서 소속 과장의 추천이

있는자 이경우 2인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제 3 조 ( 입주자서약 ) 소장은 입주자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받은후에 입주물 허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 입주자 준수사항 )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아파트 시설에 대한 일체의 개축, 변경 기타 다른 훼손행위의 엄금
2. 새마을사업의 출전수법
3. 물발사고 발생시에 긴급응조
4. 전기, 수도로등 공급금의 납기내 납부
5. 인근입주자에 방해되는 소란행위금지
6. 입주자상호간의 친목도모
7. 아파트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화
8. 전대행위 금지

제 5 조 ( 입주자자격상실 )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 4 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다문국책선로전보된 자 또는 해임된 자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의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p>제 6 조 (관리책임자) ① 소장은 입주자 중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p> <p>②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기단속</li> <li>2. 제 4 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li> </ol>	<p>3. 기타 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 7 조 (운영관리현황보고) 소장은 입주자의 번영 기타 운영관리 현황의 번영에 관하여 매 인월 5 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 약 서

본인이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기간중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면 만일 위반할 때에는 퇴거명령을 비롯한 여타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아파트의 기존시설에 대한 일체의 개축, 변경 기타 다른 훼손행위의 엄금
2. 새마을사업의 출선수법
3. 수원지내의 돌발사고시에 긴급응소
4. 전기, 수도료등 공납금의 납기내 납부
5. 인근 입주자에 방해되는 소란행위 금지
6.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아파트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화
8. 전대 행위 금지

197 . . . .

수 장

직 성 명



시 율 특 별 시 장 귀 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고 시</div> <p>◎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 고시제 6 호</p>	<p>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 8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배합사료 성분 등록이 되었기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사료성분				유 효 기간	비고		
							조성량	최대량	이 하 %	이 하 %				
21 ~ 47	계일축산 협동사료 공업사	성동구관동 465~1	황중현	배합 사료	상관초기용 배합사료 (산란용중계)	조성후부 터대략20 주까지	이상 %	2.0	이하 %	7.5	이하 %	7.5	간 74.3.14 년 76.3.13	등록 74.3. 14
21 ~ 48	"	"	"	"	젖소용배합 사료	생후대략 18개월 이상	13.0	2.0	13.0	12.0	"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24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이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

1974. 3. .

서울특별시 장

주차장시설결정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내버스주차장	도봉구 방학동 44-6	3,421.4 (1,036평)	아육교통주식회사
	" 44-3		
	" 46-1		
" "	관악구 봉천동 134-2	2,260.2 (684.9평)	성진상운주식회사
	" 135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 (교차철도)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77호(62. 2. 8) 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교차철도) 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1.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종로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하철정차량확장공사

3. 사업규모 : 폭 3.7m 높이 11.3m 연장 50m 출입구 1개소 폭 7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74. 3 ~ 74. 7. 31

6.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소재지 : 지목, 지적 및 건물조사 (별첨)

7.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인 가 중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하철정차량확장공사 폭 3.7m 높이 11.3m 연장 50m

출입구 1개소 : 폭 7m

3.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5. 사업기간 : 74. 3 ~ 74. 7. 31

6.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 : 건물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정함.

1974. 1. . .

서울특별시 장

인 가 조 건

1. 사업실시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2. 별첨 계약설계도서 (평면도) 에 의 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중로1가	52~1	대	21.5	52~1	대	21.5	침진동 200	조 : 과
2	"	52~5	"	5.9	52~5	"	5.9	"	"
3	"	53~2	"	9	53~2	"	9	아현동산 5~3	김지환
4	"	53~4	"	0.4	53~4	"	0.4	"	"
5	"	53~5	"	3	53~5	"	3	"	"
6	"	54	"	47	54	"	47	내자동 167-2	송사석
7	"	54~1	"	1.3	54~1	"	1.3	"	"
8	"	54~2	"	15.6	54~2	"	15.6	"	"
9	"	55	"	0.3	55	"	0.3	중로1가 55	구각회사 주남상회
10	"	55~4	"	44.9	55~4	"	44.9	"	"
11	"	55~6	"	0.8	55~6	"	0.8	"	"
12	"	55~1	"	12.8	55~1	"	12.8	관철동 28	김병용
13	"	55~2	"	0.7	55~2	"	0.7	중로1가 55	전봉계 주식회사
14	"	55~3	"	2.3	55~3	"	2.3	"	"
15	"	55~5	"	12.9	55~5	"	12.9	"	"
16	"	55~7	"	2.4	55~7	"	2.4	"	"
17	"	56	"	1.4	56	"	1.4	중로1가 55-1	김훈승
18	"	56~2	"	33.6	56~2	"	33.6	"	"
19	"	56~1	"	3.2	56~1	"	3.2	"	김덕보
19 필지				219					

건 물 조 서

번호	소재지	구 조	층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종로1가 53~ <sup>2</sup> / <sub>4</sub>	복 조 와 증	1) 12 2) 12	12 12	아현동산 9-3	김지환
2	" 54~ <sup>2</sup> / <sub>1</sub>	철근콘크리트 (내화조도단층)	1) 81 2) 61 3) 56.33	61 61 56.33	내자동 167	송사석 주식회사 수남상회
3	" 55	연 와 조 양 철	1) 43.2 2) 43.2	43.2 43.2	"	"
4	" 55~ <sup>2</sup> / <sub>3</sub>	연 와 조 도 단 층	1) 16.32 2) 32.46	16.32 32.46	"	건부제지 주식회사
5	" 56	복 조 와 증	1) 28 2) 10	28 10	서린동 59-1	김훈용
계				375.51		

○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매시장)  
결정과 지적 등 인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 (도매시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던 도시계획법제 12조와 동법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호(73. 가. 도시계획시설 (도매시장) 조서

4.4) 와 동고시제 6호 (74.1.5)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3. 7

서울특별시 장

순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중앙도매시장	중구 오장동 14-2의 60필지	378.9명 (1,250㎡)	농수산물 진어물분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197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고시

197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4. 3. 4

서울특별시 장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81,375,740 천 원
일 반 회 계	49,587,746 천 원

○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초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

1. 로선조서별첨
2. 관계도서별첨

(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라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3. 14

서울특별시감

변경도면표시와 감음(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청및관할구청에 보관함.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강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1		10 m	165 m	창동 518	창동 524	
변경	"	1		10	165	"	"	기정선과맞추어 일부조정
기정	"	3		6	130	강위동 39-20	강위동 37-2	
변경	"	"		"	"	"	"	현재이동도로에 맞추어 조정
기정	"	3		6	200	북면 185-1	북면동 100-4	
변경	"	"		6	"	"	"	현재이동도로에 맞추어 조정

공 고

○ 건설부공고제 17 호

건설부공고 제 96 호(70.9.3)로 사업시행. 인가된 바 있는 서울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하였거 이를 공고한다.

1974. 2. 23

건설부장관



<p>1. 사업명 : 서울신림지구 보지구 확정리사업</p> <p>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 림동, 봉천동, 독산동각일부</p> <p>3.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4. 변경사항</p> <p>1)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70. 9. 3-1973. 12. 31 변 경 : 1970. 9. 3-1975. 12. 31</p> <p>2) 시장 변경</p>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위 치	면 적	위 치	
시장용지	13,233㎡ (4,000명)	102,133 274,381 부류	19,375㎡ (5,861명)	102,133 274,381 264부류	264부류내 6,162㎡(1,861명)을 추가건설
<p>5. 기 타 :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생략).</p>					
<p>○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p> <p>서울특별시토산품생산업체 육성자금집행요령공고</p> <p>상공부고시제 10496 호 (74.2.4) 및 상공부공고제 7643 호 (74.3.4) 중 소</p>			<p>기업육성자금 운용요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토산품생산업체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74. 3. 8 서울특별시장</p>		
<p>1.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요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별 자금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 (용자대상) 상공부공고제 9679 호 (72.12.29)에 의하여 토산품 생산직접업체로 지정받은 자</p> <p>3. (지원비용) 가. 자금구분: 추천자금 나. 지원한도:</p>			<p>시설자금 20,000천원 이내 운전자금 10,000천원 이내 (기대출액포함)</p> <p>다. 용자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3년 이내</p> <p>라. 이 자 : 시설자금 년리 10 % 운전자금 년리 15.5 %</p>		

4. (신청절차) (1)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별첨서식 제 1호에 의한 용자추천신청서 1통을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시장은 용자 신청업체의 자격요건과 자금지급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호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은행 관할지점장에 추천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서울특별시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은행 관할지점에 용자신청서(중소기업은행 소정서식 및 구비서류)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의절차) (1) 취급지점장은 용자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 용자에 필요한 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용자적격업체에 대하여는 일건서류를 본점에 제출하고 용자 부적격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추천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본점에 보고한다.

(2) 중소기업은행장은 각 지점으로 부터 제출된 용자신청서류를 접수한후 15일이내에 중소기업 자금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금대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은행장은 각 지점으로 부터 보고받은 용자 부적격업체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은행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상공부장관과 추천기관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위임) 이 요령집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은행장이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 서식)

서울특별시토산품생산업체 육성 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토산품 생산업체 육  
성자금 융자추천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신청인주소

기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①

사업체 규모	상시종업원	명	자산총액	원	
대상업종과품목	업종		품목		
자격요건					
신청자금	자금구분	중소요액	융자신청액	%	적요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산품생산업체지정서사 1통
3. 기타 수출관계 증명서류 각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영업감찰 각 1부



3. 자금조달계획							
구 분	조달방법	총소요액	조달계획				비고
			자기자금			용자 신청액	
			증자	차입금	기타		
시설 자금							총소요액은 4항(2)의 증설계획시설 합계액 과 일치하여야 함.
운전 자금							1회전자금에 한함.
계							
※ 확정된시설에 대한 증명서류 (건축허가서 사본·기계계약서 사본)							
4. 운전자금사용계획 (할량 및 인건비 등)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1회전 소요액				

5. 시설현황 및 증설계획					
(1) 기존시설 (단위:천원)					
시설명	장부가격	시가	비고		
(2) 증설계획시설 (단위:천원)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6. 수출실적 및 계획

구 분	수출 대상국	수출 품명	수출액 (\$)	원보수 입액(\$)	외화가 목액(\$)	가목률 (%)	수출실 장액(\$)	비고
최근 1년간 수출실적								
향후 1년간 수출계획								
74년도 수출목표								

※ ① 미불(\$) 이외의 수출실적은 미불(\$)로 환산하여 기입할 것.

② 수출실적계획 및 목표액에는 수출관계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7. 차입금내환

차입은행	대출과목	당초차입금	잔액	기일	담보
당행	재정시설 재정운전				
타행					
계					

- ※ ① 담보난에는 공장 일반부동산 등으로 그 평가액을 구분 기록할 것.
- ②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 ③ 신산업제인 경우 확정된 공장부지할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여 기지 발수를 완료하고 회동조합, 공장등록·영업감란 등 양과 1개월내 완료할 수 있는 일체.



## 8. 담 보 물

(단위: 원)

종 류	수 당	시 가	소 유 자	선 순위 내 용		비 고
				순 위	실 정 액	

## 9. 기타 참고사항

## 대 차 대 조 표

(74. . 현재) 기업체명:

과목	금액	비고	과목	금액	비고
(II) 유 동 자 산			一. 부 채		
1. 현 금 파 이 금			(I) 유 능 부 채		
2. 받 을 어 음			1. 지 금 여 음		
3. 외 상 예 출 금			2. 외 상 예 입 금		
4. 부 가 증 권			3. 은행으로부터의단기차입금		
5. 제 출			4. 타행으로부터의단기차입금		
6. 만 제 출			5. 미 지 금 금		
7. 원 제 보			6. 증 당 금		
8. 제 공 출			7. 미 불 입 금		
9. 지 장 출			8. 전 수 금		
10. 주주입원기 중입원권			9. 예 수 금		
11. 전 출 금			10. 주주입원의단기채무		
12. 예 차 보 증 금			11.		
13. 수 입 위 탁 금			12.		
(III) 고 정 자 산			13.		
1. 건 물			(IV) 고 정 부 채		
2. 구 속 물			1. 은행으로부터의단기차입금		
3. 가 제 장 비			2. 타행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		
4. 선 박			3.		
5. 차 량 파 운 반 구			4.		
6. 공 구 기 구 와 비 품			5.		
7. 토 지			(V) 부 채 총 계		
8. 전 설 가 재 정			二. 자 본		
9.			(I) 자 본 금		
10.			1. 수권주식수 ( )주		
11. 특 허 권			2. 미발행주식수 ( )주		
12. 광 업 권			3. 발 행식수 ( )주		
13. 어 업 권			(II) 잉 여 금		
14. 전 세 권			1. 자 본 준 비 금		
15.			2. 이 익 잉 여 금		
16.			3. 재 평가 처 럼 금		
17. 투 자 유 가 증 권			4. 이 익 준 비 금		
18. 출 자 금			5. 임 의 적 립 금		
(VI) 이 연 계 정			6. 당 기 말 미 처 리 금		
1. 장 업 비			7. 이월이익잉여금미감액		
2. 전 분 비 용			나. 당 기 순 익 금		
3. 전 설 이 자			(III) 자 본 총 계		
4. 실험 연구 비			(VI)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					
(VII) 자 산 총 계					
대 손 충 당 금					
감 가 상 차 충 당 금					

주: ① 받을어음과 외상예출금은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할 것.

②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차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할 것.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42 호</p> <p>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물 생산지정업체 지정변경공고</p> <p>중소기업수출물생산 지정업체의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물</p> <p>1. 변경지장</p>	<p>생산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공고한다.</p> <p>1974. 3. .</p> <p>서울특별시</p>
--	--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자	수출물명	지정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자	수출물명
324	주식회사 왕중사	이수환	동대문구 장안동 436-45	외역계물	103	주식회사 왕중사	이수환	중로구 동로5가 256번지	외역계물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44 호</p> <p>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계제외인부현경관광공표</p> <p>1. 서울특별시 신림, 시흥, 김포, 경인, 구로구 회계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계제외를 안결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조, 55조 및 제 33조 규정에 따라 광표일로부터 15일간 공표공고한다.</p> <p>2. 환계제외현경 관제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색 계획지구 회계리 11리에 비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p> <p>3. 시유수업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p>	<p>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p> <p>공 표 관 계 요</p> <p>1. 사업명 : 신림, 시흥, 경인, 김포, 구로 지구획정리사업</p> <p>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부지역 영등포구 독산동, 복동, 화곡동, 신정동 일부지역</p> <p>3. 변경면적 : 환지면적 6,835.30 평</p> <p>4. 변경조서 : 별첨</p> <p>1974. 3. 13.</p> <p>서울특별시</p>
---	---

**사 령**

◎ 1974. 3. 1.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확육 1 등 서기보 이 경 회  
 수산청전출을 명함.

◎ 1974. 3. 5.  
 내무국총무과 지방기  
 계 사 보 정 병 조  
 경상남도전출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서기관 함 중 원  
 교 수 부  
 부이사관에 임함.  
 1 호봉을 함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에 포함.  
 1974년3월7일  
 대 통 령

◎ 1974. 3. 8.  
 중 구 지방행정 사 흥 회 영  
 성동구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사 일 장 석  
 영봉포구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 사 위 순  
 마포구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이 흥 윤  
 서 부 과 장  
 서 부 계 장  
 용산구시민봉사실장 직무대리  
 에 임함.

농 지 과 지방농림 사 이 락 근  
 공원과공원관리지장 직무대리  
 에 임함.  
 양서출장소 지방농림 김 실  
 농지과사방조림지장 직무대리  
 에 임함.  
 도 봉 구 지방건축 사 조 규 찬  
 건축과건축 1 계장직무대리에 임함.  
 지하철건설부 지방건축 사 이 원 무  
 부총무과건축 지장직무대리  
 중구건축과장직무대리에 임함.  
 용 산 구 지방건축 사 최 규 환  
 용산구건축과장 직무대리에 임함.  
 지 하 철 지방건축 사 정 찬 우  
 건설본부 기 사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건축  
 제장직무대리에 임함.  
 중구보건소 지방의무 과 원 정 숙  
 동대문구보건소보건의도과장에  
 포함.  
 동 대 문 구 지방의무 과 장 성 임  
 보 건 소 기 과  
 중구보건소보건의도과장에 포함.  
 성북구보건소 지방의무 과 지 우 창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도과장  
 에 포함.

성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시 직급
유탁준	은행출장소건설과장	공로구	지방토목기과
김진우	중로구토목과장직무대리	관악구	"
최영수	중구	영동출장소	"
황부익	성동구	역청사업소	"
신우철	도봉구	양서출장소	"
성필현	관악구토목과장	은행출장소	"
안주원	영동출장소건설과장	안강건설사업소	"
정영고	구회정리? 과한지과장	도시계획과제개발과장	"
김학제	도시계획과제개발과장	시정담당개발3과장	"
문장고	양서출장소건설과장직무대리	강구	"
윤지병	역청사업소장직무대리	심동구	"
반상균	문화공보실공보과장	은수2과은수2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용운	문화공보실문화과장	기획담당관신기과	과장
김영철	기획담당관실기획관리과장	경제담당관실동조사과장	"
이우석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과장	은수3과재무과장	"
안식환	예산담당관실예산1과장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과장	"
손홍구	시정개발담당관실개발2과장	다동병원사무과장	"
손동운	감사담당관실감사1과장	회계과회계심사과장	"
김승걸	총무과외전과장	총무과차량과장	"
이철송	차량과장	은수1과은수지도과장	"
서경희	인사과조직관리과장	감사담당관실감사1과장	"
조남호	보임1과장	총무과외전과장	"
이봉우	보임2과장	인사과조직관리과장	"
윤과	전형과장	중구세무1과장	"
김동훈	행정과지도과장	행정과행정관리과장	"

성 명	발 명 사 합	현 직	
		부 서	직 급
박 화 수	행정과행정관리제장	시장개발담당관실개발2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지 호	세정과세정제장	성동구세무2과장	"
강 신 규	세정과세원제장	세정과세정제장	"
엄 주 창	회계과회계심사제장	예산담당관실예산1제장	"
이 규 현	보건행정과보건행정제장	업무과서무제장	"
정 호 진	청소1과서무제장	서대문구보건소위생과장	"
박 종 욱	청소1과장비제장	은평출장소시민과장	"
성 정 남	상경과소미자보호제장	문화공보실공보제장	"
이 필 우	양정과조작제장	인사과보임2과장	"
이 제 춘	운수1과운수지도제장	경리과관재제장	"
김 태 식	운수2과운수2과장	인사과전행제장	"
유 지 복	운수3과과무제장	천호출장소세무과장	"
김 현 중	시설관리과유료도로제장	용산구보건소민원봉사실장	"
박 종 심	업무과서무제장	보건행정과보건행정제장	"
이 병 규	경리과관재제장	청소1과서무제장	"
이 양 원	청소2과처리제장	상경과소미자보호제장	"
김 두 권	종로구시민봉사실장	영등포구세무1과장	"
김 언 배	종로구세무1과장	남부병원서무과장	"
임 진 형	중구산업과장	성동구세무1과장	"
김 형 수	중구세무1과장	양정과조작제장	"
조 완 회	중구세무2과장	중구산업과장	"
김 규 회	동대문구세무1과장	중부병원서무과장	"
조 영 춘	성동구총무과장	서대문구총무과장	"
윤 종 각	성동구세무1과장	종로구세무1과장	"
이 만 제	성동구세무2과장	도시가스사업소과장제장	"

성 명	발령 사항		전 직	
			부 서	직 급
김 별 선	성동구	주채과장	중구사무 2 과장	지방행정사무원
이 경 만	성북구	총무과장	성동구총무과장	"
오 일 용	"	산업과장	성북구세무 2 과장	"
이 범 운	"	세무 1 과장	서대문병원사무과장	"
이 유 성	"	세무 2 과장	철소 1 과치리계장	"
하 삼 근	도봉구	세무 1 과장	건강검열사업소관리과관리계장	"
유 경 상	"	철소과장	종로구시 민봉사실장	"
만 창 회	"	시 민봉사실장	영등출장소산업과장	"
백 상 승	서대문구	총무과장	성북구총무과장	"
임 승 복	"	세무 1 과장	천호출장소사무과장	"
장 세 환	마포구	총무과장	인사과보임 1 계장	"
오 상 환	"	시 민봉사실장	동대문구세무 1 과장	"
이 만 봉	"	세무 1 과장	동부병원 사무과장	"
진 명 환	영등포구	시 민봉사실장	영등출장소세무과장	"
김 완 규	"	세무 1 과장	영등포구시 민봉사실장	"
이 태 식	"	철소과장	영등포병원사무과장	"
장 국 현	관악구	세무 1 과장	관악구세무 2 과장	"
김 재 원	"	세무 2 과장	도봉구시 민봉사실장	"
김 현 경	"	철소과장	증거관리 사업소장	"
배 병 호	진호출장소	사무과장	순환담당관실순환 1 계장	"
김 영 호	"	세무과장	도시개발과(시민회관리과장)	"
조 낙 회	영등출장소	산업과장	정신병원사무과장	"
장 태 수	"	세무과장	경생원장	"
이 민 상	은명출장소	시 민과장	마포구세무 1 과장	"
정 일 태	"	산업과장	시설관리 과유료 도로계장	"

성 명	발 행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최 명 규	양서출장소	시민과장	관악구세무 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춘 근	"	산업과장	관악구청소과장	"
이 대 복	종로구보건소	위생과장	마포구총무과장	"
김 용 석	성동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용산구시민봉사실장	"
이 복 용	성북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양서출장소산업과장	"
임 태 승	서대문구보건소	위생과장	성동구주택과장	"
최 길 수	마포보건소	위생과장	영등포구청소과장	"
이 규 신	용산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서대문구세무 1과	"
민 응 식	"	위생과장	영등포구보건위생과장	"
장 순 무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장	종로구보건소위생과장	"
최 현 식	동부병원	서무과장	성동구보건소민원봉사실장	"
유 성 택	영등포병원	서무과장	성북구산업과장	"
홍 연 표	중부병원	서무과장	마포구보건소위생과장	"
이 중 원	남부병원	서무과장	양서출장소시민과장	"
박 용 용	아동병원	서무과장	은평출장소산업과장	"
김 영 술	정신병원	서무과장	마포구시민봉사실장	"
이 건 응	서대문병원	서무과장	청소 1과장비계장	"
추 교 남	자동차운수사업소장		단속과지도계장	"
장 춘 기	한강건설사업소 관리과관리계장		배정과체원계장	"
경 필 호	중기관리사업소장		자동차운수사업소장	"
박 준 영	경생원장		운동장운영담당관	"
이 용 운	도시가스사업소 과장계장		도봉구세무 1과장	"
허 태 열	서울시군부		행정과지도계장	"



<p>1973.12.11가 더법원 판결에 의하여 72.9.11과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에 의한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p> <p>단속과 지도계장보 보람.</p> <p>지방행정사무관 이대수</p> <p>73.12.12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72.12.18과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에 의한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p> <p>사무담당공실 법시계장보 보람.</p> <p>공무원교육원 권정구사 이용수</p> <p>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p> <p>본격행정과 지방행정사 이동찬</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선책에 처함.</p> <p>부직을 명함.</p> <p>중로구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보치소 지방행정사 김영철</p> <p>(적위해제중) 수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부직을 명함.</p> <p>송구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기 최주남</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기 니병덕</p> <p>수도사업소 서</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은영출장소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중로구 지방행정기 황파길</p> <p>수도사업소 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기 이도영</p> <p>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중로구 지방행정기 박도희</p> <p>수도사업소 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가추시장 지방행정기 유정규</p> <p>서기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규정에 의하여 선책에 처함.</p> <p>도봉구 근무를 명함.</p> <p>성동구 지방행정기 신경옥</p> <p>수도사업소 서기보</p>
---	---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규정  
에 의하여 각봉 1월에 취임.  
성북구 군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규정  
에 의하여 각봉 1월에 취임.  
은명출장소 (선대문구) 군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감 동 지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 규정  
에 의하여 각봉 1월에 취임.  
성동구 군무를 명함.

1974. 3. 9  
산 림 청 농림기과 윤 태 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임을 명함.  
지방농림기과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농지과 보호제장에 포함.  
보건사회국 지방외무 정 배 용 기  
외무기정에 임함.  
10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보건의사회국외무제장에 포함.

1974. 3. 9  
대 통 령

1974. 3. 11  
성 북 구 지방외무 문 홍 무  
보건소장 기 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연함.  
김인환  
지방보통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성동구 군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신 강 한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3.11.29  
자(발령제 1104) 징계처분(감  
봉 3월)을 동일자로 변경 결재  
에 처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박 채 식  
보 건 소 서 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3.11.22  
자(발령제 1054) 징계처분(감  
봉 1월)을 동일자로 두효로 한다.  
성 북 구 지방행정 유 연 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73.11.29  
자(발령제 1104) 징계처분(견  
책)을 동일자도 취소한다.  
도 북 구 지방행정 이 동 수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12.13 자(발령제 1169) 정제허분(전 직)을 동일자로 취소함.</p>	<p>성북구보건소 지방행정 사무관 조병호 영등출장소 사무과장시 보함. 영등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이병호 원내 직하여 그직을 면함.</p>
<p>도 방 구 지방행정 주 병 언 서기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12.13 자(발령제 1169) 정제허분(감 봉 1월)을 동일자로 취소한다.</p>	<p>1974. 3. 16 중 구 지방토목 최 승 호 수도사업소 기사보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토목 이 윤 익 기사보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1974. 3. 13 하 수 과 기 사 보 유 정 안 원내 직하여 그직을 면함.</p>	<p>영 선 과 지방방 기제기사보 윤 식 배 기사보 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p>
<p>토목시험소 지방토목 기사보 울 용 현 원내 직하여 그직을 면함.</p>	<p>1974. 3. 18 상 정 과 지방행정 실 심 남 사무관 성북구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p>
<p>1974. 3. 15 경기도의청 지방건축 부서과두과 기사보 최 상 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9호봉을 급함.</p>	<p>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 홍 국 사무관 상정과 소비자보호제강과 보함. 중 구 지방행정 이 시 은 기사보 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이 광 하 교수보 안전담당관 사무대리를 명함.</p>	<p>도 방 구 지방행정 이 재 호 기사보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 방 구 지방행정 원 종 단 기사보 관악구 근무를 명함.</p>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박경설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이상설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이영휴	용 산 구 지주 방행정사	주정유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주 방행정사	이진우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임상철
중구 근무를 명함.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주 방행정사	이현태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윤우병
중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주 방행정사	최재봉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한진갑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주 방행정사	김종배	양서출장소 지주 방행정사	복인상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주 방행정사	김유권	양서출장소 지주 방행정사	서광호
관악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주 방행정사	박상영	양서출장소 지주 방행정사	김언환
종로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주 방행정사	윤영현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이천복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변중영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신진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이강하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김종호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주 방행정사	허창주	마 포 구 지주 방행정사	변영호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지서기보	김현규	조경과 지구방행 정서보	유시유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지서기보	정갑순	양방과 지구방행 정서보	민은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지서기보	최용삼	도시행정과 지구방행 정서보	양은섭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구방행 정서보	황한업	도시계획과 지구방행 정서보	김영복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지서기보	강용근	구획관리2과 지구방행 정서보	강영기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포구 지구방행 정서보	박종진	운수 2과 지구방행 정서보	이우탁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세정과 지구방행 정서보	이은경	의약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김녀수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세정과 지구방행 정서보	김덕수	사회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김국지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운수 2과 지구방행 정서보	수정화	사회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박인인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양호담당위원 지구방행 정서보	실인식	아동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우성순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공보실 지구방행 정서보	김상용	구획관리1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우준재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연료과 지구방행 정서보	조완묵	하수과 지방행정 지서기보	박승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단 속 과 지방행정기 은영출장소 근무를 명함.	외 완 행	아 동 과 지방행정기 상복구 근무를 명함.	김 용 제
통계담당관실 지방행정기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남공시중	양 성 과 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손 유 혁
부 니 과 지방행정기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전 명 혜	윤수 1 과 근무를 명함.	
전 측 과 지방행정기 중구 근무를 명함.	정 살 흥	©1974. 3. 20 내무부지방 행정연구원 행정서기	김 명 자
윤수 1 과 지방행정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진 회 용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윤수 1 과 지방행정기 중구 근무를 명함.	김 정 수	3 호봉을 급함. 내무국 시민과 근무를 명함.	

서 울 북 별 시 장